

현 행 안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편 역사와 교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미감리회·남감리회 선교부 선교 시대</p> <p>[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서는 매서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읽혔고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자들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3년 9월 미감리회 볼티모어연회 소속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는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난 후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Robert S. Maclay)로 하여금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에 미감리회 국외선교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부부와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를, 국외여선교부는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을 초대하여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내한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편 역사와 교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미감리회·남감리회 선교부 선교 시대</p> <p>[2] 1. 복음 수용과 선교사 내한 1870~1880년대 새로운 사상과 종교를 갈망하던 한국인들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이들이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서는 매서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읽혔고 그 결과 많은 세례 지원자들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3년 9월 미감리회 볼티모어연회 소속인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는 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민영익을 만난 후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가우처 목사는 미감리회 국외선교부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구하였고 일본 주재 미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Robert S. Maclay)로 하여금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해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국왕의 허락을 받았으며 6월29일에 한국 최초로 개신교 주일예배를 드렸으며, 7월 6일에 두번째 예배를 드렸다. 이에 미감리회 국외선교부는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부부와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부부를, 국외여선교부는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을 초대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내한하였다.</p>	
<p>[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p>	<p>[3] 2. 미감리회의 한국 선교 미감리회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문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어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으며, 시병원과 보구여관은 한국 근대 의료사업의 요람이 되었다. 감리회 출판사에서 펴낸 성서와 서적은 복음 전도에 유효한 도구가 되었고 한글문화의 발</p>	

현행안	개정안	비고
<p>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이 첫 감리교 세례교인이 되었고, 1887년 10월 9일 서울에서 오늘의 정동제일교회의 모체인 ‘벤엘예배당’이 설립되었다.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엽윗청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주와 몽고,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p>	<p>전을 촉진시켰다. <u>스크랜턴과 아펜젤러는 1885년 5월과 7월에 정동에 처소를 마련하였고, 1885년 10월 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1887년 7월 24일 배재학당 학생 박중상에게 첫 세례를 거행하였으며, 1887년 10월 9일 남대문안에 ‘벤엘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였다.</u> 1897년 서울과 인천, 평양에서 엽윗청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모체다.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목회자 양성을 추진하여 1901년 최초 한국인 목사로 김창식 목사, 김기범 목사를 배출했다. 미감리회에서는 1902년 하와이 이민 선교를 시작으로 북만주와 몽고, 일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p>	
<p>[5] 4. 부흥운동과 토착 신학 1903년 원산에서 남감리회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의 회개로 시작된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 1909년 백만명구령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한국인들은 이 부흥운동을 통해 회개와 중생과 성결을 체험하였고,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신앙체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토착 신학이 감리교 신학자들에 의해 수립되었다. 노병선 목사는 기독교를 동양과 서양을 포괄하는 ‘하늘의 종교’이자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은혜의 종교’로 변증하였다. <이하생략></p>	<p>[5] 4. 부흥운동과 토착 신학 1903년 원산에서 남감리회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의 회개로 시작된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 1909년 백만명구령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한국인들은 이 부흥운동을 통해 회개와 중생과 성결을 체험하였고,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신앙체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토착 신학이 감리교 신학자들에 의해 수립되었다. <u>노병선 전도사는</u> 기독교를 동양과 서양을 포괄하는 ‘하늘의 종교’이자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은혜의 종교’로 변증하였다. <이하좌동></p>	<p>*‘목사’→‘전도사’로 수정</p>
<p>제2장 교리 제 4 절 사회신경</p>	<p>제2장 교리 제 4 절 사회신경 [00] 1. 사회신경(1930년)<신설> <u>인류는 겨레와 나라의 차별이 없이 천지의 주재시며 오직 하나 이신 하나님의 같은 자녀임을 믿으며 인류는 형제주의 아래에서 이 사회를 기독교주의의 이상사회로 만듭니 우리 교회의 급무로</u></p>	

현 행 안	개 정 안	비 고
	<p>믿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회신경을 선언하노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종의 동등 권리와 동등 기회를 믿음. 2. 인종과 국적의 차별 철폐를 믿음. 3. 가정생활의 원만을 위하여 일부일처주의의 신성함을 믿으며 정조문제에 있어 남녀간 차별이 없음을 믿으며 이혼의 불행 을 알고 그 예방의 방법을 강구 실행함이 당연함을 믿음. 4. 여자의 현대 지위가 교육, 사회, 정치, 실업 각계에 있어서 항상 발달하여야 될 것을 믿음. 5. 아동의 교육받을 천부의 권리를 시인하여 교육에 힘쓰고 아 동의 노동 폐지를 믿음. 6. 인권을 시인하여 공사창 제도 기타 인신매매의 여러 가지 사 회제도를 반대함이 당연함을 믿음. 7. 심신을 패망케 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판매 사용을 금지함 이 당연함을 믿음. 8. 노동 신성을 믿고 노동자에게 적합한 보호와 대우가 당연함 을 믿음. 9. 정당한 생활유지의 품삯과 건강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노동 시간을 가지게 함이 당연함을 믿음. 10. 7일중 1일은 노동을 정지하고 안식함이 필요함을 믿음. 11. 노동쟁의에 공평한 중재제도가 있음이 필요함을 믿음. 12. 빈궁을 감소케 함과 산업을 진흥케 함을 믿음. 13. 불건전한 오락과 허폐 사치 등으로 금전과 시간을 낭비함은 사회에 대한 죄악임을 믿음.<신설> 	
<p>【57】 사회신경 <생략></p>	<p>【57】 2. 사회신경(1997년) <개정> <좌동 ></p>	
부 록	부 록	

현 행 안	개 정 안	비 고
<p>2. <u>연합속회</u> 총칙(영국감리교회)</p> <p>【60】 초대적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교리가... ...(중략)이로 말미암아 온 영국 안에 있는 웨슬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 그 <u>연합속회</u>의 총칙은 아래와 같다.</p>	<p>2. <u>연합신도회</u> 총칙(영국감리교회) <개정></p> <p>【60】 초대적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교리가..... ...(중략)... ...이로 말미암아 온 영국 안에 있는 웨슬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 그 <u>연합신도회</u>의 총칙은 아래와 같다. <개정></p>	
<p>【62】 제1은 남을 해롭게 하지 말며 흔히 하기 쉬운 각양 악한 것을 피할 것이다.</p> <p>그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것과, 늘 하는 사업이나 매매하는 일로 주일을 범하는 것과, 필요한 일(신병 같은 것) 밖에 술을 마시는 것이나 취하는 것과, 싸움과 시비와 떠들음과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나, 욕을 욕으로 대하는 것과, 매매할 때에 여러 말 하는 것과, <이하 중략></p>	<p>【62】 제1은 남을 해롭게 하지 말며 흔히 하기 쉬운 각양 악한 것을 피할 것이다.</p> <p>그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것과, 늘 하는 사업이나 매매하는 일로 주일을 범하는 것과, 필요한 일(신병 같은 것) 밖에 술을 마시는 것이나 취하는 것과, <u>노예를 갖고 있거나 인신매매하는 일,</u> 싸움과 시비와 떠들음과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나, 욕을 욕으로 대하는 것과, 매매할 때에 여러 말 하는 것과, <이하 중략></p>	

현 행 안	개 정 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2편 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문</p> <p>【65】 <u>개신교의 공통적인 신학적 전통과</u>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이 미국감리교회가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윤허 받고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enzeller) 목사와 6월 3일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국감리회 선교부와 미국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 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07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편 헌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문</p> <p>【65】 <u>개신교 공통의 신학 전통과</u>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u>이 미국감리교회의 가우처(John F. Goucher)목사 등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u>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입국하여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윤허 받았다. <u>그 후 미국감리교회는 1884년말 의사요 목사였던 스크랜턴과 그의 모친인 스크랜턴 대부인 그리고 아펜젤러목사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장을 수여하였다.</u>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enzeller) 목사와 5월 3일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입국시켜 조선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국감리회 선교부와 미국남감리회 선교부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 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15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p>	<p>문장을 정리함</p> <p>스크랜턴 입국일이 역사적 고증을 거쳐 6월 3일에서 5월 3일임이 확인됨</p> <p>2015년 개정연도 삽입</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66】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과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역사적인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u>유지함으로</u>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66】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u>사법</u>,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u>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u> 목적으로 한다. <개정></p>	

현 행 안	개 정 안	비고
【69】 제4조(사회신경)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u>감리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표준이다.</u>	【69】 제4조(사회신경)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u>감리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신앙적 규범이다.</u> <개정>	
【72】 제7조(교구) 감리회는 <u>대한민국에 그 교구를 설치한다. 다만, 대한민국 영토 밖에 설치된 연회 또는 지방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u>	【72】 제7조(교구) 감리회는 <u>대한민국을 교구로 하되, 대한민국 영토와 영토 밖에 연회와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다.</u> <개정>	
【73】 제8조(외국 감리회와의 협약) <u>우리</u> 감리회는 외국 감리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u>법적인</u> 효력을 가진다.	【73】 제8조(외국 감리회와의 협약) 감리회는 외국 감리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u>감리회 장정과 동일한</u> 효력을 가진다. <개정>	
제2장 회원	제2장 회원 제1절 교인 【00】 제9조(교인의 정의) <u>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감리회 회원이 되기를 결심하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다.</u> <신설>	
【74】 제9조(교인의 반열) <u>교인은</u>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74】 제10조(교인의 구분) <u>교인은</u>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75】 제10조(회원의 구별) 감리회의 회원은 <u>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등은 법으로 정한다.</u>	【75】 제11조(교인의 직분) 감리회의 교인은 <u>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한다.</u> <개정>	
	제2절 평신도 임원 【00】 제12조(평신도 임원의 정의) <u>평신도 임원은 개체교회에서 선교, 교육, 봉사, 교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이다.</u> <신설>	
【76】 제11조(개체교회 평신도 임원) <u>개체교회</u> 평신도 임원은 <u>집사, 권사, 장로로</u> 구분한다.	【76】 제13조(평신도 임원의 구분) 평신도 임원은 <u>집사, 권사, 장로로</u> 구분한다. <개정>	

현 행 안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사역자</p> <p>【00】 제14조(사역자의 정의) 사역자는 개체교회에서 교인을 심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훈련되고 선택된 이다. <신설></p>	
<p>【77】 제12조(개체교회 사역자) 개체교회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p>	<p>【77】 제15조(사역자의 구분)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교역자</p> <p>【00】 제16조(교역자의 정의)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감리회로부터 특별히 세움 받은 이다. <신설></p>	
	<p>【00】 제17조(회원의 자격 등)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신설></p>	
<p>【83】 제18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p> <p>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u>다만, 미주특별연회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u></p> <p>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u>법률로</u> 정한다.</p> <p>③ 감독의 임기는 <u>2년으로</u> 하고 <u>겸임제로</u> 하며 연임할 수 없다.</p>	<p>【83】 제22조(감독)<개정></p> <p>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개정></p> <p>② 감독의 임기는 2년 <u>겸임</u>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개정></p> <p>③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u>법</u>으로 정한다.<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산관리</p> <p>【86】 제21조(재단소속)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 <개정></p> <p>【86】 제25조(소속 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개정></p> <p>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개정></p> <p>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개정></p> <p>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 <개정></p>	

현 행 안	개 정 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개정> 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태화복지재단 <개정> 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신설> ⑦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신설> ⑧ 학교법인 삼일학원 <신설> 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설>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신설> ⑪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신설> ⑫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신설> 	
<p>【87】 제22조(재산관리) <u>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u></p> <p><u>장학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해당 법인의 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u></p>	<p>【87】 제26조(재산관리) <u>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86]제 21조 ⑥⑦⑧⑨⑩항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 한다. <신설></u> ② <u>제21조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관리하되, 부동산의 매매,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한다. <신설></u> ③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u> ④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u> 	

현 행 안	개 정 안	비고
	<p>⑤ 제4항에 따라 감리회가 설립할 법인은 정관 제1조에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관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은 감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p>	
<p>【88】 제23조(재산처분 및 기채)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88】 제27조(재산관리에 관한 법률) 감리회 소유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헌법 및 법률 개정</p> <p>【91】 제26조(발의권) 헌법 및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p> <p>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p> <p>②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p> <p>③ 입법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p> <p>④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개정></p> <p>【91】 제30조 (발의권) 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p> <p>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p> <p>② (삭제)</p> <p>② 입법위원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p> <p>③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연회공동발의안</p>
	<p>【00】 제31조 (입법절차)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으로 정한다. <신설></p>	

현 행 안	개 정 안	비 고
<p>【93】 제28조(의결 및 공포) ①~③ 생략 ④ <u>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u></p>	<p>【93】 제33조(의결 및 공포) ①~③ 좌동 ④ <u>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25일 이내에 공포한다. 만약 감독회장이 그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발효 된다. <개정></u></p>	
<p>제 10 장 보 칙</p> <p>【94】 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p> <p>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기독교타임즈」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p> <p>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 10 장 보 칙</p> <p>【94】 <u>제34조</u>(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p> <p>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u>도서출판 KMC</u>, 「기독교타임즈」,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u>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p> <p>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부 칙 (2015. 10. 30)</p> <p>【00】 <u>제1조(시행일)</u>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00】 <u>제2조(경과조치)</u></p>	

현 행 안	개 정 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제3편 조직과 행정법</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교회</u></p> <p>【00】 제2조(교회의 정의) <u>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례를 행하며,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신앙공동체이다.</u> <신설></p>	
	<p>【00】 제3조(교회의 직무) <u>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u> <신설></p> <p>① <u>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u> <신설> ② <u>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u><신설> ③ <u>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u><신설> ④ <u>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u><신설> ⑤ <u>절제와 금욕, 선행 등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삶을 훈련한다.</u><신설></p>	
	<p>【00】 제4조(교회의 설립 등) <u>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한다.</u>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개체교회</p> <p>[000]제5조(개체교회의 설립) 개체교회의 설립은 다음 각 항과 같다.<신설></p> <p>①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신설></p> <p>② 개체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p> <p>③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p> <p>④ 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설립을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p> <p>⑤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 설립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p>	
	<p>[000]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은 다음과 같다.<신설></p> <p>①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신설></p> <p>② 개체교회가 제1항에 따라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분립 또는 통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u>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u></p> <p>④ <u>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u></p> <p>⑤ <u>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의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u></p>	
	<p>[000]제7조(개체교회의 폐쇄)</p> <p>① <u>개체교회의 폐쇄는 구역회의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지방 감리사에게 보고하면 당해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감리사가 지방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신설></u></p> <p>② <u>지방실행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체교회 폐쇄를 의결하면 지방감리사는 연회에 보고한다.<신설></u></p>	
<p>【108】 제7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p> <p>① <u>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u></p> <p>② <u>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u></p> <p>③ <u>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u></p>	<p>【108】 제12조(교인의 권리) <u>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u></p> <p>① <u>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개정></u></p> <p>② <u>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u></p> <p>③ <u>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개정></u></p>	
<p>제3절 집사</p> <p>【109】 제8조(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제 3 절 집사</p> <p>【109】 제13조(집사의 자격) <u>개체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①-③<생략>	<u>집사를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u> <개정> ①-③<좌동>	
	제 4 절 권 사 【000】 제16조 (권사) <u>개체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u> <신설>	
	제5 절 장 로 【000】 제21조(장로) <u>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두며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u> <신설>	
【117】 제16조(장로의 자격) <u>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 ① <생략> 40세 이상이 되고 <u>67세 미만 된 이로서</u> 권사로 <이하생략> ②-③<생략>	【117】 제23조(장로의 자격) <u>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 ① 40세 이상이 되고 <u>65세 미만 된 이로서</u> 권사로 <이하생략> ②-③<좌동>	
【123】 제22조(장로의 은퇴) 장로는 <u>70세(2월 말 기준)가 된 후 처음 개최되는 지방회에서 은퇴한다.</u> 다만, 65세 이상이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123】 제29조(장로의 은퇴) <u>2월 말일을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해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u>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개정>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125】 제24조(심방전도사의 자격) <u>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2항, 제3항, 제4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125】 제31조(심방전도사의 자격) <u>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 ①<좌동> ② <u>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총회실행부위원</u>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로서 심방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이</p> <p>③ 감리회가 인준한 신학원 3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이</p> <p>④ <생략></p>	<p><u>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u> <개정></p> <p>③ 감리회가 인준한 <u>신학원에서 신학교육</u> 과정을 졸업한 사람. <개정></p> <p>④ <좌동></p>	
<p>【128】 제27조(교육사의 자격) <u>교육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소명감이 투철한 이</u></p> <p>②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의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이</p>	<p>【128】 제34조(교육사의 자격) <u>교육사는 감리회에 입교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u><개정></p> <p>① <u>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u> <개정></p> <p>② <u>총회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u> <신설></p>	
<p>【130】 제29조(교육사의 직무) <u>교육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③ <생략></p>	<p>【130】 제36조(교육사의 직무) <u>교육사는 담임목사의 지도아래 개체교회 교인의 교육과 신앙지도를 담당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u> <신설></p> <p>①~③ <좌동></p>	
<p>제7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 담임자</p> <p>【132】 제31조(수련목회자의 자격) <u>수련목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② <생략></p> <p>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p>	<p>제7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 담임자</p> <p>【132】 제38조(수련목회자의 자격) <u>수련목회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② <좌동></p> <p>③ <u>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가 될 수 없다. 1~2 <생략>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p>	<p><u>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②항의 신학대학교나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필수과목(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u> <개정> ④ <u>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감리회가 위탁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어야 한다.</u> <신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가 될 수 없다. 1~2 <좌동>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u>동성연애(결혼)</u>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개정></p>	
<p>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p> <p>【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 ① <생략>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③ <생략></p>	<p>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p> <p>【137】 제43조(담임자의 파송) ① <좌동>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u>10년 동안</u>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③ <좌동> ④ <u>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파송 한다. 다만,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못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감독이 직권 파송한다.</u> <신설></p>	
<p>【139】 제3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생략> ② 행정 책임자 :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9 <생략></p>	<p>【139】 제45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좌동> ② 행정 책임자 :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9 <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③ <생략>	<u>10. 담임자 이임시 개체교회의 사무와 행정 재정 등 교회 현황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u> <신설> ③ <좌동>	
제9절 부담임자 【140】 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제9절 부담임자 【140】 제46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① <u>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u> <개정> ② <u>제1항에 의한 부담임자 청빙을 위한 구역인사위원회는 감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자가 소집할 수 있다.</u> <개정>	
제10절 개체교회의 부서와 조직 【144】 제43조(부서의 구성)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 ① ~ ③ <생략> ④ ~ ⑥ <생략>	제10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144】 제50조(부서의 종류)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 ①~ ③ <좌동> ④ <u>예배부</u> <신설> ⑤ ④ ⑥ ⑤ ⑦ ⑥	
【149】 제48조(속장의 선출) 속장은 제47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속장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149】 제55조(속장의 선출) 속장은 <u>임원 중에서 기획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당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 <개정>	
	【000】 제62조(예배부의 조직) <u>예배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u>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p> <p>① <u>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예배부를 조직한다.</u> <신설></p> <p>② <u>예배부는 부장 1명과 총무 또는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u> <신설></p>	
	<p>【000】 제63조(예배부의 직무) 예배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신설></p> <p>① <u>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u> <신설></p> <p>② <u>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u> <신설></p> <p>③ <u>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u> <신설></p>	
<p>【167】 제66조(연회 준회원의 자격) 연회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⑨ <생략></p>	<p>【167】 제75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 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개정></p> <p>①~⑨ <좌동></p>	
<p>【169】 제68조(연회 준회원의 보수(생활비)) 연회 준회원의 보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연회 준회원의 <u>보수(생활비)</u>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p> <p>② <u>구역 서리담임자의 보수(생활비)</u>는 그 구역(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의 <u>보수(생활비)</u>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u>구역 서리담임자와 수련목회자는 자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u></p>	<p>【169】 제77조(연회 준회원의 생활비)</p> <p>연회 준회원의 생활비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연회 준회원의 <u>생활비</u>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p> <p>②구역 서리담임자의 <u>생활비</u>는 그 구역(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의 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구역 서리담임자와 수련목회자는 자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p>	
<p>【171】 제7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p>	<p>【171】 제79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⑤ <생략></p> <p>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p> <p>1~2 <생략></p> <p>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p> <p>⑦ <생략></p>	<p>다음 각 항과 같다.</p> <p>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p> <p>1~2 <좌동></p> <p>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u>동성연애(결혼)</u>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p> <p>⑦ <좌동></p>	
<p>【174】 제7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u>연회 협동회원의 자격은</u>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⑤ <생략></p> <p>⑥ 협동회원으로 파송 받은 이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하며, 타 교회로 파송 받을 수 없다.</p> <p>⑦ ~⑧ <생략></p>	<p>【174】 제82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u>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u></p> <p>①~⑤ <좌동></p> <p>⑥ <삭제></p> <p>⑦ ~⑧ <좌동></p>	
	<p>【000】 제84조(<u>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u>) <신설></p> <p>① <u>협동회원은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허입한다.</u> <신설></p> <p>② <u>감독은 제1항에 의하여 허입한 협동회원을 허입 당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파송하되, 허입 당시 파송된 교회 외에는 파송할 수 없다.</u> <신설></p> <p>③ <u>협동회원이 파송된 교회는 상호교환 파송할 수 있다.</u> <신설></p>	
<p>【176】 제75조(연회 협동회원의 목사안수)</p> <p>① <u>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u></p> <p>② <u>신학원을 수료하고 협동회원으로 가입한 이는 목사안수를</u></p>	<p>【176】 제85조(협동회원의 목사안수) <u>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로 안수한다.<개정></u></p> <p>①~②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받을 수 있다.</p> <p>[178] 제77조(국외에 있는 교역자) <u>국외에 있는 교역자의 지위와 의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u>국외로 장기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는 출국 전에 소속 연회 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하는 이는 휴직 처리한다.</u></p> <p>② <u>국외에 있는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연회 감독과 감리사에게 자기 근황과 활동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u>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는 퇴회 처리한다.</u></p> <p>④ <생략></p> <p>⑤ <u>유학중에 있는 교역자는 장기체류를 허가하되 석사과정은 7년, 박사과정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업을 마치고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아니하면 미파 처리한다.</u></p>	<p>[178] 제87조(국의 거주 교역자의 <u>인사처리</u>) <u>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u></p> <p>① <u>교역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전에 소속 연회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휴직 처리한다. <개정></u></p> <p>② <u>국외에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 연회 감독에게 장정 표준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u></p> <p>③ <u>교역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석사과정은 7년,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과정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미파 처리된다.<개정></u></p> <p>④ <좌동></p> <p>⑤ <삭제></p>	
<p>[179] 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u>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u></p> <p>① 개체교회 담임자, 부담임자, 수련목회자의 인사문제는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p> <p>② 감리회 본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교역자 인사문제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p> <p>③ 국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의 인사문제는 소속교회 담임자의 천거와 지방 감리사의 제청으로 감리회 본부에서 선교사로 인준한 후 이를 연회 감독이 소속 선교사로 파송하고 감독 회장이 연명한다. 단, 평신도 선교사는 선교국에서 인준하고 교회에서 파송하며 연회에 보고한다.</p> <p>④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p>	<p>[179] 제88조(교역자의 기관파송) <개정></p> <p>① <u>교역자의 기관파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다. <개정></u></p> <p>1. <u>교역자는[133] 제39조 제3항에 규정한 기관에 파송할 수 있다. <개정></u></p> <p>2. <u>[133]제39조 제3항에 규정한 기관에 파송을 받고자 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장의 기관파송청원서, 채용결의서, 생활비지급확인서, 연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u></p> <p>3. <u>제2호에 의한 파송청원을 접수된 때에는 감독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파송한다.<개정></u></p> <p>② <u>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파송과 동시에 소</u></p>	

현행	개정안	비고
<p>수 없다. 다만, 담임자의 배우자가 해당 분야의 기관사역을 원할 때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회 감독이 기관목사로 파송할 수 있다.</p> <p>⑤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p> <p>⑥ 선교사는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p>	<p><u>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u> <개정></p> <p>③ <u>제1항에 의하여 파송된 교역자가 파송기관에서 사직할 경우 사직과 동시에 기관파송은 취소되며, 소속교회의 파송 또한 별도의 조치없이 취소된다.</u> <개정></p> <p>④ <u>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개체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파송할 수 있다.</u> <개정></p> <p>⑤ <u>교역자 선교사는 국외선교사관리규정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u> <개정></p> <p>⑥ <좌동></p>	
<p>【180】 제79조(교역자 인사기록의 작성과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p> <p>①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그 원본은 연회에서, 부분은 감리회 본부에서 보존한다.</p> <p>②~④ <생략></p>	<p>【180】 제89조(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는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 <u>감리회본부 및 연회본부는 다음 각 호의 교역자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의 그 원본은 연회에서, 부분은 감리회 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u> <개정></p> <p>1. 가족관계증명서</p> <p>2. 최종학력증명서 사본</p> <p>3.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p> <p>4. 그 밖에 인사에 관한 기록</p> <p>②~④ <좌동></p>	
<p>【182】 제81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④ <생략></p>	<p>【182】 제91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u>다음과 같다.</u> <개정></p> <p>①~④ <생략></p> <p>⑤ <u>은퇴한 교역자는 원로목사라 칭하며, 연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u> <신설></p>	
<p>【183】 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p>	<p>【183】 제9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u>다음</u></p>	

현행	개정안	비고
<p><u>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u> ①~⑦ <생략></p>	<p><u>각 항과 같다.</u> <개정> ①~⑦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p> <p>【185】 제84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 <u>각 항과 같다.</u></p> <p>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u>10년</u>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연급 순에 따라 감리사 서리가 된다.</p> <p>②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 다만,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이 제2항보다 우선한다.</p> <p>③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p> <p>【185】 제94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 <u>각 항과 같다.</u></p> <p>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u>12년 급을 필하고</u> 회기를 마친 이 <개정></p> <p>② 해당 지방회에서 <u>4년 이상 시무한 이</u> <개정></p> <p>③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나 <u>최근 2년간</u>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교역자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p> <p>④ <u>정회원이 된 이후에 교회재판법에서 정직이상이나 국가 형법(특별형법 포함)에 의해 금고형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이</u> <신설></p> <p>⑤ <u>총회가 정한 연수과정을 2회 이상 필한 이</u> <신설></p>	
<p>【196】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u>각 항과 같다.</u></p> <p>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1인이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196】 제10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u>각 항과 같다.</u> <개정></p> <p>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u>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며</u>,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p> <p>② <좌동></p> <p>③ <u>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u>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③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p>	<p>④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개정></p>	
<p>【198】 제97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⑧ <생략> ⑨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총무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⑩~⑪ <생략> ⑫ 감독은 연회 내에 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도 지방회에서 6개월 이상 개척 설립보고를 아니할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토록 한다. ⑬~⑱ <생략></p>	<p>【198】 제107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⑧ <좌동> ⑨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총무를 <u>선출하지 못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u> 감리사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⑩~⑪ <좌동> ⑫감독은 연회 내에 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도 지방회에서 60일 이상 개척 설립보고를 아니할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토록 한다. ⑬~⑱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미주특별연회</p> <p>【221】 제120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특별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교역자은급제도의 시행 및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u>미국 국내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u>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를 조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미주특별연회</p> <p>【230】 제120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특별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교역자은급제도의 시행 및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u>미국 현지법에 따라</u>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를 조직한다.</p>	
<p>【229】 제128조(미주특별연회 운영을 위한 규정 및 규칙) 미주특별연회는 연회의 특성상 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며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입법의회가 닫혀 있는 동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 경우 장정의 헌법과 법률 정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p>	<p>【229】 제138조(미주특별연회의 자치권) 미주특별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특별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특별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감독회장</p> <p>【232】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감독회장</p> <p>【232】 제14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p>	<p>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어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p> <p>② <좌동></p> <p>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어야 한다. <신설></p> <p>④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개정></p>	
<p>【234】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③ <생략></p> <p>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p> <p>⑤~⑥ <생략></p> <p>⑦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p> <p>⑧~⑯ <생략></p> <p>⑳ 감독회장은 월간 「기독교세계」와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되며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이사장이 된다. 다만, 주간 「기독교타임즈」 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p> <p>㉑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p>	<p>【234】 제143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실장, 원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p> <p>②~③ <좌동></p> <p>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1명을 추천한다. <개정></p> <p>⑤~⑥ <좌동></p> <p>⑦ <삭제></p> <p>⑧~⑱ <좌동></p> <p>⑲ 감독회장은 도서출판 KMC, 월간 「기독교세계」와 주간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이 된다. <개정></p> <p>㉑ 감독회장은 태화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2명), 사회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3명)의 이사를 파송한다.<신설></p> <p>㉒ 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본부조직</p> <p>[237] 제136조(본부의 조직) <u>감리회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감리회 본부를 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본부조직</p> <p>[237] 제146조(<u>감리회</u>본부의 설치) 감리회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 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속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감리회 본부를 둔다.</p> <p><개정></p>	
<p>[238] 제137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④ <생략></p> <p>⑤ <u>출판국</u></p> <p>⑥~⑦ <생략></p>	<p>[238] 제147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p> <p>①~④ <좌동></p> <p>⑤ <삭제></p> <p>⑥~⑦ <좌동></p>	
<p>[239] 제138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p> <p>① 총무 1명</p> <p>② 부총무 1명(해외선교 담당)</p> <p>③ <u>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선교사관리부</u> 부장 각 1명</p>	<p>[239] 제148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총무 1명, 부총무 1명(해외선교 담당)과 직원을 둔다. <개정></p> <p>①~③ <삭제></p>	
<p>[240] 제139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u>교회개혁과 교회성장, 이주민선교 등 국내선교정책에 관한 업무</u></p> <p>② <u>농어촌 환경선교 및 특수선교사업과 사회선교정책에 관한</u></p>	<p>[240] 제149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교회성장 및 교회개혁, 미자립교회 등에 관한 정책 및 업무 <개정></p> <p>② 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정책 및 제반</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업무</p> <p>③ <u>선교관계책자의 편집과 자료수집에 관한 업무</u></p> <p>④ <u>북한선교정책, 새터민(탈북민)선교정책 및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업무</u></p> <p>⑤ <u>국내외 교회일치운동의 협력에 관한 업무</u></p> <p>⑥ <u>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정책 및 제반 업무</u></p> <p>⑦ <u>세계선교정책 수립과 시행 업무</u></p> <p>⑧ <u>선교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u></p> <p>⑨ <u>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선교협력에 관한 업무</u></p> <p>⑩ <u>전략적 선교지 개발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u></p> <p>⑪ <u>선교사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u></p> <p>⑫ <u>해외교민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u></p> <p>⑬ <u>국내외 선교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협력에 관한 업무</u></p> <p>⑭ <u>선교후원교회 관리에 관한 업무</u></p>	<p>업무 <개정></p> <p>③ <u>신앙과 직제와 관련한 제반 정책 수립 <개정></u></p> <p>④ <u>북한선교정책, 새터민(탈북민)선교정책 및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업무 <개정></u></p> <p>⑤ <u>에큐메니칼 및 교회 일치와 관련한 정책 및 업무 <개정></u></p> <p>⑥ <u>대사회선교 및 농어촌, 환경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개정></u></p> <p>⑦ <u>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빈민 선교 등에 관한 선교정책 <개정></u></p> <p>⑧ <u>세계선교정책 수립과 시행업무 <개정></u></p> <p>⑨ <u>선교 관련 홍보 및 자료집 발간에 관한 업무 <개정></u></p> <p>⑩ <u>선교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 <개정></u></p> <p>⑪ <u>해외교민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개정></u></p> <p>⑫ <u>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 <개정></u></p> <p>⑬ <u>전략적 선교지 개발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 <개정></u></p> <p>⑭ <u>선교사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개정></u></p> <p>⑮ <u>국내외 선교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협력에 관한 업무 <신설></u></p> <p>⑯ <u>선교 후원교회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u></p> <p>⑰ <u>이슬람 선교 대책에 관한 업무 <신설></u></p>	
<p>【241】 제140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p> <p>① <u>총무 1명</u></p> <p>② <u>교육행정부, 장년교육정책부, 차세대교육정책부, 교육교재부</u></p>	<p>【241】 제150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u>총무 1명과 직원을 둔다.</u> <개정></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부장 각 1명</u></p> <p>【243】 제142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p> <p>① 총무 1명</p> <p>② <u>평신도부, 사회봉사부, 사회복지부</u> 부장 각 1명</p>	<p>【243】 제152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u>총무 1명과 직원을 둔다.</u> <개정></p>	
<p>【244】 제143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⑧ <생략></p>	<p>【244】 제153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⑧ <좌동></p> <p>⑨<u>평신도 재능기부운동, 신앙실천운동, 희망봉사단 활성화에 관한 업무</u> <신설></p> <p>⑩<u>국내외 재해기금 모금 및 지원업무</u> <신설></p>	
<p>【245】 제144조(사무국의 조직) 감리회의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p> <p>① <u>총무 1명</u></p> <p>② <u>재산관리부, 회관관리부, 은급부, 재단회계부, 민원부</u> 부장 각 1명</p>	<p>【245】 제154조(사무국의 조직) 감리회의 유지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u>총무 1명과</u> 직원을 둔다. <개정></p> <p>①<삭제></p> <p>②<삭제></p>	
<p>【249】 제148조(연수원의 조직)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감리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직하고 <u>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u></p> <p>① <u>원장 1명</u></p> <p>② <u>제1연수부(일영), 제2연수부(입석)</u> 부장 각 1명</p>	<p>【249】 제158조(연수원의 조직)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감리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직하고 <u>원장 1명과</u> 직원을 둔다. <개정></p> <p>①<삭제></p> <p>②<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251】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감독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p> <p>① 행정기획실장 1명</p> <p>②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서무행정부, 본부회계부 부장 각 1명</p>	<p>【251】 제160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감독 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실장 1명과 직원을 둔다. <개정></p> <p>①<삭제></p> <p>②<삭제></p>	
<p>【254】 제153조(총무, 원장, 실장의 자격) 총무, 원장, 실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p>	<p>【254】 제163조(총무, 실장, 원장의 자격) 총무, 실장, 원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개정></p>	
<p>【255】 제154조(총무, 원장, 실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원장, 실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⑤ <생략></p> <p>⑥ 교회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u>사회법(형법)</u>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이로 한다.</p> <p>⑦ <생략></p>	<p>【255】 제164조(총무, 실장, 원장의 임면) 본부의 총무, 실장, 원장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p> <p>①~⑤ <좌동></p> <p>⑥ 교역자는 정회원이 된 후, 장로는 장로 안수 받은 후에 교회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국가 형법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이로 한다. <개정></p> <p>⑦ <좌동></p>	
<p>【256】 제155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 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p>	<p>【256】 제165조(총무, 실장, 원장의 임기)</p> <p>① 총무, 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p> <p>② 행정기획실장의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같다.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p> <p>【257】 제156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p> <p>①~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p> <p>【257】 제166조(본부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p> <p>①~③ <좌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출판국 위원회</p> <p>⑤~⑧ <생략></p> <p>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p> <p>⑩~⑪ <생략></p>	<p>④ <삭제></p> <p>⑤~⑧ <좌동></p> <p>⑨ 사회복지법인 <u>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u> <개정></p> <p>⑩~⑪ <좌동></p> <p>⑫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이사회</u> <신설></p> <p>⑬ <u>학교법인 애향학원 이사회</u> <신설></p> <p>⑭ <u>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이사회</u> <신설></p>	
<p>【259】 제158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p> <p>① <생략></p> <p>② 각 재단이사회의 조직</p> <p>1~2 <생략></p> <p>3.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감리회대표 6명, <u>복지관대표 5명, 미연합감리회 선교사대표 2명, 복지전문가 1명</u></p> <p>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전문직 이사 3명</p> <p>5. 장학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p> <p>6. 각 재단이사회의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된다.</p>	<p>【259】 제168조(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p> <p>① <좌동></p> <p>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p> <p>1~2 <좌동></p> <p>3. 장학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p> <p>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 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p> <p>5.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 4명, 사업기관대표 2명,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p> <p>6. <삭제></p> <p>7. <좌동></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7. <생략>	<p>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는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다만 삼일학원은 감리회에서 파송한 5명으로 한다.<신설></p> <p>8. 도서출판 KMC, 기독교 타임즈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신설></p>	
	<p>【000】 제170조 (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신설></p> <p>①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2020년까지 68명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p> <p>② 부서별 정원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정한다. <신설></p>	
	<p>【000】 제171조 (임금피크제의 시행) 감리회 본부의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신설></p> <p>①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3년 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 3년 전 기준급여의 90% 2. 퇴직 2년 전 기준급여의 80% 3. 퇴직 1년 전 기준급여의 70% <p>②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신설></p> <p>【000】 제175조(법인의 설립) 감리회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p> <p>① 총회의 의결 후 정관을 제정하여 입법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법인의 정관에는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고,</p>	

현행	개정안	비고
	<p><u>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감리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을 명시한다.</u></p> <p>③ <u>최초의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한다.</u></p>	
	<p>【000】 제176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000조에 규정한 감리회 소속 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신설></p> <p>① 정관 개정안은 당해 법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해 발의된 정관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이나 합병, 이사선임 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급히 정관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총회실행부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신설></p> <p>③ 제2항에 의하여 입법의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감독은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당해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 이사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정관 개정안을 입법의회가 의결한 대로 개정한다. <신설></p>	
	<p>【000】 제177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은 다음과 같다. <신설></p> <p>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p> <p>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p> <p>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장학재단</p> <p>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p> <p>⑤ 사회복지법인 감리교태화복지재단</p> <p>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u>학교법인 감리교학원</u> ⑧ <u>학교법인 삼일학원</u> ⑨ <u>학교법인 연세대학교</u> ⑩ <u>학교법인 이화학당</u> ⑪ <u>학교법인 이화학원</u> ⑫ <u>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u> ⑬ <u>학교법인 배재학당</u> ⑭ <u>학교법인 배화학원</u> ⑮ <u>학교법인 영명학원</u> ⑯ <u>학교법인 호수돈학원</u> ⑰ <u>학교법인 광성학원</u> ⑱ <u>학교법인 매향학원</u> ⑲ <u>학교법인 송도학원</u> ⑳ <u>학교법인 영화학원</u> ㉑ <u>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애향숙</u> ㉒ <u>학교법인 애향학원</u> ㉓ <u>사회복지법인 애향원</u> 	
<개정>	<p>【000】 제178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p> <p>①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법인의 이사파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유지재단이사회</u>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2. <u>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u>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1명으로 구성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3. <u>장학재단이사회</u>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위원장으로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 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p> <p>5.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교역자 2명, 평신도 2명) 4명, 사업기관대표 2명,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p> <p>6.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p> <p>7.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개정></p> <p>8.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 5명을 파송한다. <개정></p> <p>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p>	
	<p>【000】 제179조(기관 및 법인 이사의 임기)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중 이 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이사에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으로 한다.<신설></p>	
	<p>【000】 제180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선출에 관한 특례) 제000조의 법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는 정관개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하였으며, 목적으로 한다.” 2.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사람 	

현행	개정안	비고
	<p><u>으로 선임한다.</u></p> <p>3. <u>“정관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로 선임한다.”</u></p>	
<p>제 6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p> <p>【264】 제16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p> <p>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p> <p>2. ~3 <생략></p> <p>② ~⑤ <생략></p>	<p>제 7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p> <p>【264】 제18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①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p> <p>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과 <u>타종교에</u>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p> <p>2. ~3. <좌동></p> <p>②~⑤ <좌동></p> <p><u>⑥대의협력위원회</u> <신설></p> <p><u>1. 감리교회의 대외 및 국제협력관계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u></p> <p><u>2. 대외협력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u></p>	
<p>제 7 절 감 사</p> <p>【265】 제164조(감사) 본부와 기독교타임즈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p>	<p>제 8 절 감 사</p> <p>【265】 제182조(감사) 본부와 <u>도서출판 KMC</u>, 기독교타임즈사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개정></p>	
<p>【269】 제168조(재정 감사) 감리회 본부의 재정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② <생략></p>	<p>【269】 제186조(재정 감사) 감리회 본부의 재정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② <좌동></p> <p><u>③감사위원회는 회계 법인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u></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위탁할 경우는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사인은 감리회 본부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회장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재임기간 동안의 본부회계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회장 인수인계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감사결과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 (2015. 10. 30)</u></p> <p>[0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설> 다만 [000] 제171조(임금피크제의 시행)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000]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선출된 감독회장, 감독 및 본부 각국 총무, 실장, 원장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각국 총무, 실장,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p> <p>[000]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의회, 각위원회 위원, 각 이사회 이사 및 감사는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신설></p> <p>[000] 제4조(경과조치) 기독교타임즈와 관련된 법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p> <p>[000] 제5조(경과조치) 도서출판 KMC에 관련된 법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000】 제6조(경과조치) <신설> <u>이 법 시행 당시 감리회본부 정원 6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u></p> <p>[000] 제7조(경과조치)제95조 ①항과 제131조 ①항의 정회원연수 의무 규정은 2016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000]제8조(경과조치) (미주특별연회 자치법 시행일)이 법 제7장 미주특별연회 자치법 규정은 미주특별연회에서 자치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p> <p>【000】 제9조(경과조치) 【000】 제84조(감리사의 자격), ②항, ⑤항은 2017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p>	